

소규모 투자신탁 해지 안내문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일부 투자신탁을 해지합니다(소규모 펀드 해지). 해지대상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제4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투자신탁 해지 관련사항을 공고합니다.

- 해지대상 투자신탁:** 피델리티 아세안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해지사유:** 투자신탁의 원본액 규모가 적정 운용규모에 미달하여 운용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92조 및 신탁계약 제42조 규정에 따라 해지하고자 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해지일:** 2022년 11월 23일(수)
- 매입관련사항:** 매입 신청은 2022년 10월 31일(월) 17시 이전까지 가능하며, 상기 매입신청기한 이후에는 매입 청구가 제한됩니다.
- 환매관련사항:** 환매 신청은 2022년 11월 11일(금) 17시 이전까지 가능하며, 상기 환매신청기한 이후에는 환매 청구가 제한됩니다.
- 상환금 지급:** 해당 투자신탁의 잔여좌수는 2022년 11월 23일 공고기준가격으로 전부 해지되어 고객 해당 계좌에 입금됩니다.
- 환매수수료 관련사항:** 투자설명서 및 신탁계약 제23조에 따라 이익금에 대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지대상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 해지(예정)일에 전부해지되는 경우 투자기간에 따른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펀드 해지일 이전에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의 경과여부 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